

2021년 제3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 심의안건

연번	안 건 명	의결사항	수정사항
1	2020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 결산(안)	원안의결	
2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3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제정(안)	수정의결	규정에 사용하지 않는 일부 문구 삭제
4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원안의결	

2021. 4.29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안건3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제정(안)

동의한 위원명단 산학협력단장(김정현), 교무처장(박동주), 기획처장(최원석), 행정처장(이기완), 산학협력부단장(전종준), 조명환, 장금주, 김철한, 성재철, 오유성

증빙자료

발신자: 산학협력단장(김정현) 수신자: 심의안건3에 대해 수정의결하셨습니까? 찬성합니다.

발신자: 교무처장(박동주)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기획처장(최원석)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행정처장(이기완) 수신자: 동의합니다.

발신자: 산학협력부단장(전종준)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조명환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장금주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김철한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성재철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오유성 수신자: 찬성합니다.

받는 사람: 모두 > > 파일 > > 여기에 메시지 입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의 「과학기술기초법 시행령」 및 「과학기술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술시행내규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획”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술시행내규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획”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관리제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OO(기관명)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통합관리 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 활용 연구시설(연구개발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 공동 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단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구분한다.

4.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OO(기관명)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OO(기관명) 연구관리 규정」 제0조를 따른다.

다) 제102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술시행내규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획”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합관리제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통합관리 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 활용 연구시설(연구개발기관의 조직 또는 부서 단위) 공동 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하는 시설단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구분한다.

4.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심의안건4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동의한 위원명단 산학협력단장(김정현), 교무처장(박동주), 기획처장(최원석), 행정처장(이기완), 산학협력부단장(전종준), 조명환, 장금주, 김철한, 성재철, 오유성

증빙자료

발신자: 산학협력단장(김정현) 수신자: 심의안건4에 대해 가결하셨습니까? 찬성합니다.

발신자: 교무처장(박동주)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기획처장(최원석) 수신자: 동의합니다.

발신자: 산학협력부단장(전종준)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조명환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장금주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김철한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성재철 수신자: 찬성합니다.

발신자: 오유성 수신자: 찬성합니다.

받는 사람: 모두 > > 파일 > > 여기에 메시지 입력...

붙임 3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규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의 「과학기술기초법 시행령」 및 「과학기술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술시행내규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획”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의 「과학기술기초법 시행령」 및 「과학기술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술시행내규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획”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술시행내규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획”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시술시행내규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획”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용대상)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통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수행하는 총합된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 및 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보유장비로 등록된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제3조(의용대상)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통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수행하는 총합된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 및 연구시설·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보유장비로 등록된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기획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의 한다.	제4조(기능) 기획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의 한다.
1.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총합된 예산 1억원 미만인 장비 R&D수행에 적용	1.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획하는 총합된 예산 1억원 미만인 장비 R&D수행에 적용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참석부

- 일 시 : 2021. 4.29(목) 14:00
- 회의방식 : 화상회의

연번	직 위	소 속	성 명	참석여부
1	위원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김정현	참석
2	위 원	교무처장	박동주	참석
3	"	기획처장	최원석	참석
4	"	행정처장	이기완	참석
5	"	산학협력부단장, 연구부처장	전종준	참석
6	"	정경대학 경제학부	조명환	참석
7	"	경영대학 경영학부	장금주	참석
8	"	공과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김철한	참석
9	"	인문대학 중국어문화학과	김광일	불참
10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성재철	참석
11	"	예술체육대학 스포츠과학과	오유성	참석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일 시	2021년 4월 29일(목요일), 14:00 ~
개최방식	화상회의
참석위원 (10명)	산학협력단장(김정현), 교무처장(박동주), 기획처장(최원석), 행정처장(이기완), 산학협력부단장(전종준), 조명환, 장금주, 김철한, 성재철, 오유성
불참위원 (1명)	김광일

□ 회의 심의안건

- ① 2020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 결산(안)
- ②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 ③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제정(안)
- ④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회의내용

- 산학협력단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분들은 채팅창에 참석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결산 안건 1개와 규정개정 관련 안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부단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심의안건 1번 「2020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이고, 내·외부 감사는 2021년 4월 6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감사개요 및 수입, 지출 총계 등 설명
- 산학협력부단장: 다음은 학교기업 더고구마 결산보고는 학교기업 더고구마 대표 김선형 교수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김선형교수: 안녕하십니까? 학교기업 더고구마 대표 김선형입니다.
 - 학교기업 더고구마 결산관련 운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 설명
- 산학협력단장: 학교기업 더고구마 관련해서 질의 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금주교수: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는 했지만, 나름 선방하신 것 같습니다.
- 김선형교수: 네, 지난번 장금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여 꽃 서비스 등 새로운 시도를 하여 매출이 늘어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행정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기업 물품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매출을 올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금주 교수: 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인건비는 증가하고, 비유동부채 즉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직원이 퇴직을 한건가요? 아니면 중간정산을 한건가요?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
- 김선형교수: 퇴직을 했습니다. 5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 두명이 퇴직하고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 장금주 교수: 네. 알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학교기업 더고구마는 올해 매출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 김선형교수: 올해 매출은 최소 4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말랭이 5백만원, 고구마비누 2백만원, 고구마 묘 최소 2천만원이상 예상됩니다.
- 장금주교수: 벌써 확정된 매출이 4천만원 이면, 연매출의 상당 부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산학협력단장: 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승일 교수님께서 시공간분석연구소 결산 관련

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일교수: 네. 시공간분석연구소 보고하겠습니다.
- 운영성과 및 재무상태현황 등 설명
- 산학협력단장: 위원님들, 시공간분석연구소 보고 관련하여 질문 있으신가요?
- 장금주교수: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유동자산 규모가 커졌는데, 기계장치를 구매하셨나요?
- 이승일교수: 네. 서버를 구매했습니다.
- 장금주교수: 네.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신거 같은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을 하시겠네요?
- 이승일교수: 네. 그렇습니다.
- 장금주교수: 시공간분석연구소 매출을 보면, 앞으로는 용역 컨설팅 사업은 하지 않고 데이터 판매 바우처 사업을 하신다는 거 같은데,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회계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 인식을 잡는 시점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 이 회계처리를 어느 분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승일교수: 국가사업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문의해보니, 매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
- 장금주교수: 네.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데이터판매 바우처 회계처리는 어려운 회계처리이니, 그 부분 한번만 다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인식 시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승일교수: 네. 알겠습니다. 컨설턴트 말에 따르면, 실질적인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을 올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국가의 지원금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스스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록 등을 남기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매출액이 감소할까요?
- 이승일교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백만원단위로 매출액 증가를 유지할 순 없습

니다. 내년 2월에 국가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3년 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2년+3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금주교수: 질문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보니 정액법으로 하신 거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수익사업이니 세금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이니, 정률법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보니 정액법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은 정액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장금주교수: 네 알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부단장님께서 산학협력단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산학협력단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학협력단 수입 및 지출 현황 등 설명
- 산학협력단장: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으시면 심의안건1에 대해 가결 요청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동의해 주셔서 심의안건1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안건2부터는 규정 관련입니다. 안건2에 대해 부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학협력부단장: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사유, 주요골자 등 설명
- 산학협력단장: 두 번째 안건에 대해 질문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심의안건 2에 대해서도 가결하겠습니까? 채팅창에 입력 부탁드립니다. 모두 동의해주셔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세 번째 안건 부단장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정사유, 주요골자 등 설명

■ 산학협력단장: 안건3번과 4번이 관련이 있으니, 이어서 안건 4번까지 보고 후 질의응답은 3번과 4번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정사유, 주요골자 등 설명

■ 산학협력단장: 규정 개정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리 대학에 맞게 적용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재철교수: 간단한 부분인데요.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규정 2조 1항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장비풀링제)'라고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규정에 '=장비풀링제' 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건담당자(정선아)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된 부분이고, 타대학 사례도 참고하여 넣었습니다.

■ 성재철교수: 조금 다듬어서 넣으면 좋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네. 주신 의견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의안건3에 대해서는 성재철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분(=장비풀링제)을 수정 및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의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동의해 주셔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그럼, 마지막으로 심의안건 4에 대해 가결하겠습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동의해 주셔서 이번 안건도 가결되었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면,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